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2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6월 7일

나. 발 의 자: 정선희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6.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선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교육의 유예 및 면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1.1. 시행)되어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효과적인 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이수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2021년 1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기미이양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추진되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교육 관련 세 부사항은 삭제되었음.
- 시행령에 있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사무 위탁, 과태료 부과 등 근거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었기에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며,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2
----------	-----

발의년월일: 2021년 6월 일

발의자: 정선희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라.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교육의 유예 및 면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나. 협의 : 문화체육과

다. 입법예고(2021. 6. 2. ~ 6. 7.)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
2.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3. 교육방법 및 강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 구청장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